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16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 부)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시설요건의 조례 이양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정부제출안	정연욱의원안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시·도 조례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	② ------------------------------------	② ------------------------------------

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다음 각 호----------.
<신 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신 설>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중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안내, 편익, 숙박 등)을 갖추고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을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고,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임.

관광특구로 지정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과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2)](참고자료 1)

---

1)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2)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그런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의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3] 지역별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즉,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상가시설의 경우 획일적으로 1종류 이상 구비하도록 하거나,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접객시설의 경우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구비하여야 한다는 등 구비기준이 모호함.(참고자료 2)

이에 개정안(정부제출안, 정연욱의원안)은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한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도조례에 이양하더라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서울특별시 50만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 이하라는 요건이 계속 적용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수용태세 증진'이라는 '관광특구'의 지정 취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관광특구'는 현재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고, 진흥계획의 수립,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지정취소 등을 모두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관광특구 내 시설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 관광특구의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4)]

4) 특례시의 경우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게 하던 것을 제2항에 직접 규정(안 제70조제2항 각 호 신설)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70조의2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 ---------- 제1항 및 제2항----------

다만, 안 제7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한 개정안(정부제출안)에 따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는 2023. 2. 10.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① 수요자 중심의 ②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③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의 57개 과제를 선정 및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안(정부제출안)은 동 계획에 따른 복지·문화분야 과제이기도 함.[5)]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5) 정부는 동 3대 추진원칙에 따라, 2022. 7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하여,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함.

한편, 2024년 7월말 기준 14개 시·도에 35개소의 '관광특구'(참고자료 3)가 지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정부제출안, 정연욱의원안)은 시설요건의 시·도 또는 특례시별 조례 제정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후'로 하고 있음. 즉, 새로 지정하려는 '관광특구'의 경우 지정 전에 해당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다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의 경우에도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요건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6] 및 별표 21(참고자료 2)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반영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분야	주요 과제
1	국토(12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2	산업(22개)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3	고용(8개)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권한
4	교육(4개)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5	복지(7개)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6	제도(4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